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행복한 TDF 2025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-2호 오기 정정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0월 23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-2.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, 이하 이 조에서 같음)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하고, 제3조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무증권 투자액의 50% 이하로 한다.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-2.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, 이하 이 호에서 같음)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하고, 제3조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무증권 투자액의 50% 이하로 한다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행복한 TDF 2030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-2호 오기 정정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0월 23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-2.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, 이하 이 조에서 같음)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하고,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무증권 투자액의 50% 이하로 한다.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-2.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, 이하 이 호에서 같음)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하고,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무증권 투자액의 50% 이하로 한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행복한TDF 2035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-2호 오기 정정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0월 23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-2.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, 이하 이 조에서 같음)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하고,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무증권 투자액의 50% 이하로 한다.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-2.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, 이하 이 호에서 같음)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하고,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무증권 투자액의 50% 이하로 한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행복한TDF 2040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-2호 오기 정정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0월 23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-2.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, 이하 이 조에서 같음)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하고,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무증권 투자액의 50% 이하로 한다.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-2.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, 이하 이 호에서 같음)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하고,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무증권 투자액의 50% 이하로 한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행복한TDF 2045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-2호 오기 정정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0월 23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-2.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, 이하 이 조에서 같음)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하고,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무증권 투자액의 50% 이하로 한다.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-2.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, 이하 이 호에서 같음)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하고,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무증권 투자액의 50% 이하로 한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파워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(제1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0월 23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(생략)	**보수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생략)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 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 **2. 투자위험**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1.80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 **2. 투자위험**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2.04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년 10월 23일 1)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2)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

		경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1.80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2.04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**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: (생략)	**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: (삭제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스마트자산배분EMP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 :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제2호에 누락된 투자대상자산 기재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0월 23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	제1항 2.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) (이하 "주식"이라 한다)	제1항 2.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(이하 "주식"이라 한다)